구식민지통치형래들을 통하여 본 제국주의의 포악성과 교활성

고 인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식민지지배와 략탈은 제국주의의 생존 방식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하나라도 더 많 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무너져가는 식민 지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 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일전집》제2권 383~384폐지)

식민지에 대한 지배와 략탈은 제국주의의 전의 생존방식이며 그를 떠나 제국주의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라도 더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포악하고 교활한 통치형태들을 고안해내면서 필사적으로 발악한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이르려 아시아, 아 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 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의 하여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전락 되였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형태에서 주목되는 것은 무엇보다먼저 **《**총독통치**》**이다.

《총독통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 치형태들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것으로서 대부분의 식민지나라들에서 적용되였다.

《총독통치》는 종주국이 자기의 식민지에 《총독》을 파견하여 그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는 가장 포악하고 강도적인 통치방 법이다.

총독은 해당 식민지에서 행정권과 립법 권, 사법권, 식민지군대의 통수권 등 일체 권력을 거머쥔 전제주의적인 폭군이였다.

《총독통치》의 가장 대표적인 실례는 조 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들수 있다.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강탈한 일제는 1910년 10 월 1일부터 《총독통치》를 개시하였다. 일 제가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총독통치》 는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력사상 그 류례 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가혹하고 극악한 전 제정치, 파쑈폭압정치였다.

일제는 력대《조선총독》들을 가장 포 악하고 악질적인자들로 지목선발하여 일 본왕의 명의로 직접 임명하고 그에게 행 정,립법,사법권과 군대통수권 등 무제한 한 권력을 쥐여주었다.

일제는 《조선총독》에게 모든 권한을 집 중시키는것과 함께 그에 필요한 기구체계 도 조작하였다. 일제는 1910년 10월 30 일 《조선총독부 및 그 소속 관서관제》 를 공포하고 《총독》 직속기구로서 내무 부, 사법부, 상농공부, 탁지부 등 5개의 부 를 두었으며 그밖에 취조국, 경무총감부, 재 판소 등 방대한 통치기구들을 《조선총독 부》소속 관청으로 두었다. 그리고 이 기 구의 관직들은 모두 저들이 차지하고 《총 독》의 명령과 지령을 집행하였다. 일제는 1918년 9월 30일에 《지방관서관제》를 공 포하여 식민지통치를 위한 지방기구까지 조 작하였는데 그 기능도 마찬가지였다. 일제 는 이러한 식민지파쑈통치기구에 의거하 여 조선인민의 모든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야수 적으로 탄압하였다.

일제의 중세기적인 《총독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당한 불행과 고통, 피해와 손실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알제리에 대한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식 민지총독통치도 제국주의의 포악성을 폭 로해주는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이다.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알제리를 강점하기 위한 침략전쟁의 첫시기인 1830년대초에 벌써 포악한 반동장군들을 총독으로 파견하여 점령지대를 통치하게 하였으며

1880년부터는 군정을 《민정》으로 바꾸 었으나 그 식민지적지배의 야만적본질에 서는 달라진것이 없었다. 프랑스총독은 모 든 권한을 독점한 폭군으로서 수만명의 강 점군과 경찰, 그밖의 모든 폭력기구와 수 단을 동원하여 알제리인민들을 야수적으 로 탄압하였다.

1881년에 악명높은 《토착인법》을 조작한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알제리사람들을 제멋대로 체포, 구금하였으며 아무런 판결도 없이 외진 사하라지대로 추방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을뿐아니라 자유로 이동할수조차 없게 하였다. 또한 알제리사람들이 자기 나라 문자로 신문을 출판할수 없고 집회도 가질수 없게 하였으며 정당과 사회단체도 조직할수 없게 한것은 물론 유럽인들이 만든 조직에도 참가할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알제리인들의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도 그가 속한 마을과 종족들에게 집단적으로 벌금을 들씌우는 등 온갖만행을 다 하였다.

충독통치는 개별적나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을뿐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통합하여서도 실시되었다.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1887년 10월 17일에 조작한 《프랑스령인도지나련방》에는 꼬힌힌(남부웰남), 안남, 통낑, 캄보쟈, 라오스(1899년부터), 하노이, 하이퐁, 뚜란(다낭) 등이 포함되였다. 《인도지나련방》은 프랑스식민지성이 관할하며 련방안에는 충독을 최고통치자로 하는 인도지나《충독부》와 그에 속하는 각종 기관들이 꾸려져있었다.

이밖에도 프랑스령서아프리카,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 영령동아프리카, 영령서아 프리카 등도 련방형식을 띤 《총독통치》 의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종족의 구성과 전통을 무시한 이러한 인 공적인 통합은 식민지적지배와 착취를 더욱 강화할것을 목적한것으로서 이 나라들 의 발전을 저애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령 토분쟁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문 제들을 낳게 한 원인으로 되였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형태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으로 《보호통치》이다.

《보호통치》는 제국주의자들이 약소국 가들에 예속적인 《보호조약》을 강요하 고 그를 《보호》해준다는 간판밑에 실시 한 식민지통치형식으로서 간접통치방식에 속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충독통치》의 야만성 과 반인민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를 반 대하는 식민지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보호통치》로 식민지통치의 반동성을 가 리워보려고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통감》 또는 《고등 판무관》을 파견하여 《보호령》들을 통치 하였다. 《통감》 또는 《고등판무관》은 우 에서 지적한 총독과 다름없는 방대한 권 한의 소유자로서 《보호국》의 외교권은 식 민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여있었다. 《보호통치》밑에서는 《총독통치》와는 달 리 해당 나라의 정권을 형식상 보존해두 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지만 실제로 그 정 권은 명색뿐이고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수 없었다.

《보호통치》의 전형적인 실례를 아프 리카에서 찾아볼수 있다.

원래 아프리카에서 《보호제도》가 발생한것은 제국주의렬강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분할하던 시기였다. 이시기 식민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강점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보호제도》를 리용하였다. 당시 식민주의자들이 강요한《보호조약》과 그에 따르는 《보호통치》는 해당 나라와 지역을 강점하기 위한 기본도구였다.

《보호통치》는 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식민지적분할이 끝난 제1차 세계대전후에 이르러 식민지통치의 중요한 형식의 하나 로 고착되게 되였다. 《보호통치》의 교활성은 영제국주의자들의 나이제리아에 대한 식민지통치에서 찾아볼수 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14년에 하부니제르의 모든 강점지역을 하나의 보호령 나이제리아에 통합하였다. 나이제리아의 최고주권은 영국국왕을 대표한 총독의 손에 집중되였다. 전국은 북부와 남부의 두 지역으로 나뉘여 각각 부총독의 관할밑에 들어갔으며 매개 주는 영국고등판무관들이, 그것은 다시 영국의원들이 통치하는 구역들로 나뉘여졌다. 이러한 통치기구는 군대와 경찰에 의거하고있었으며 그의 모든 권력은 영국인들에게 쥐여져있었다.

지방통치에는 종래의 지방통치자들과 통치기구를 그대로 리용하였다. 1916년에 발포된 《토착정권법》에 의하여 지방통치자들과 그의 통치기구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식민지지방행정기구에 인입하였다. 그리고 지방통치자들에게 일정한 수의 경찰과 감옥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며세금을 징수할 의무를 지웠으며 총독의 승인밑에 도시건설, 주류생산, 물고기장사 등에 관한 결정을 채택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토착재판법》에 따라 지방재판소에서 해당 주민들과 관련된 부차적인 소송사건들을 처리하게 하였다. 또한 종래의 인두세대신 수입의 10분의 1 을 받아내는 수입세를 부과하였으며 《토 착정권》으로 하여금 그것을 징수하여 그 일부를 쓸수 있게 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식민지통치체 계를 《간접통치》체계라고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간접통치》방식을 적용한 대표적지역은 주로 반식민지로 있던라틴아메리카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이 방식을 택하게 된것은 라틴아메리카독립전쟁(1810-1826년)이후 이 지역에 조성된

정세와 관련되였다. 독립전쟁후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수백년동안의 에스빠냐, 뽀르뚜갈의 식민지통치체계를 배제하면서 그어느 자본주의렬강에게도 정치적으로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주로 라틴아메리카통치배들을 끌어당겨 《간접통치》의 방법으로 저들의 지배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실례로 파뗴말라에 대한 미제의 《간접통치》를 들수 있다. 당시 파뗴말라에서는 1898년부터 봉건지주들과 미제의 충실한주구인 에스뜨라다 까브레라(통치년대:1898 -1920년)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미제는 이친미괴뢰정권과 《유나이레드 프루트》라는 독점회사를 통하여 이 나라에서 온갖 전횡을 다하였다.

미제는 이외에도 꼴롬비아와 볼리비아,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 서 친미괴뢰들을 내세워 이 나라들의 정 치정세를 혼란시키고 저들의 침략적지배 를 실현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도 아르헨띠나, 베네수엘라, 뻬루 등 여러 나라들에서 친영적인 주구들을 정권의 자리에 올려앉히고 그들을 조종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지배를 강화해나갔다.

제국주의자들이 《보호통치》(또는 《간접통치》)를 실시한 목적은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여 인민들을 기만하고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며 추장을 비롯한 토착인상층을 매수하여 식민지통치의 사회적지반으로 리용함으로써 식민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분렬파괴하고 식민지적지배를 유지공고화하려는데 있었다.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은 직접적인 식민지강점이 아니라 《보호》라는 간판을 씀으로써 제국주의경쟁자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릴것도 타산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조건에 따라 《총독통 치》와 《보호통치》를 결합시킨 《련방 통치》형식도 취하였다.

아시아에서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인 도지나련방》을 조작하고 총독의 통치밑에 서 캄보쟈, 라오스를 《보호통치령》으로 만 들었다. 그리하여 《인도지나련방》령토의 북부국경지대인 라오스에서는 웰남의 주 행정기구가 그대로 유지되였으며 웰남인 관리들이 주의 통치에 직접 참가하였다. 그 러나 이것은 형식일뿐 실지로 이 지역도 프 랑스의 완전식민지였다. 웰남에서도 황제 가 그대로 있었으나 그는 해마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집 행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꼭두각시에 불과 하였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형태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으로 《위임통치》이다.

《위임통치》는 제1차 세계대전후 당시 반혁명적국제기구였던 《국제련맹》의 명 의로 전승국들이 전패국들의 식민지들을 재 분할할 때 적용한 교활한 통치형식이였다. 《위임통치》라는 말은 국제련맹이 일정 한 기간(40~ 50년간) 그 통치를 위임하였 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리웠다.

1920년 4월 쌍모레회의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수리아를 프랑스의 《위임통치령》으로, 팔레스티나를 영국의 《위임통치령》으로 넘 긴다는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 리아의 통치권은 그에 대한 통치를 《위임》 받은 프랑스전권대표의 수중에, 팔레스티나 의 모든 전권은 영제국주의자들이 파견한 《고등판무관》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1922년 7월 20일 국제 련맹리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전패국인 도 이췰란드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또고와 까 메룬을 각각 동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동쪽부분은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의 《위임 통치령》으로, 서쪽부분은 영제국주의자들 의 《위임통치령》으로 만들었다. 동부 적도아프리카의 도이췰란드제국주의의 식민지는 대부분이 탄가니카라는 이름으로 영제국주의의 《위임통치령》으로, 나머지 부분인 르완다와 부룬디는 벨지끄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령》으로, 서남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공화국련방》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위임통치》를 내오는 목적이 마치도 《자치능력이 없는》 주민 들의 《발전을 원조》하기 위한데 있는것 처럼 떠벌이였지만 사실상 그 목적은 전 패국들의 식민지들을 재분할하는것을 국 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데 있었으 며 오랜 기간 식민지지배밑에서 고통을 당 해온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심 을 무마하고 식민지통치를 유지공고화하 자는데 있었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하 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와 민족 의 복리와 진보에 관심이 있을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위임통치국은 그 위임통치 령에서 완전한 주인행세를 하며 그 령토 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수 있는 권한을 부 여받았다. 《위임통치령》은 본질에 있어 서 직할식민지와 다른것이 없었으며 이 나 라 인민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노 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이와 같이 식민지나라들에 세워진 여러가지 식민지통치형태들에는 제국주의자들의 극히 포악하고 야수적이며 잔인하고 교활한 침략적정체가 반영되여있다. 이 포악하고 교활한 식민지통치로 하여 식민지나라 인민들은 극히 사소한 정치적권리와 자유는 물론 초보적인 인권마저 짱그리 유린당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식민지노예의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게되였다.